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793호 2010. 8. 24(화)

- 부시장지시사항..... 2
- ◀ 입법예고 ▶
-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제2010-779호) 5
- ◀ 공 고 ▶
- 도로지정 공고(제 2010-191호)..... 10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시장 지시사항

- 2010. 8. 23(월) 간부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훈 시 (8. 2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님 부재시 복무관리 철저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동해거점도시회의차 시장님께서 29일까지 공석으로, 부재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	전 부 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무관급 인사 완료에 따른 하반기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진 및 전보된 부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과약 완료하고, 모든 부서장은 지방선거, 3대 행사 등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어 추진하기 바람. 	전 부 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1년도 시책보고 준비 철저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. 14(화) 2011년도 시책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, 이번 시책보고는 예년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와 민선5기 새로운 시작을 감안하여 「더 높은 성장」 과 「더 나은 삶」 에 주안점을 두고 신선하고 내실 있는 시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. - 아울러 보고시는 새로운 시책 중심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할것. 	기획예산과 전 부 서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8. 23)</p>	<p>○ 죽도 어시장내 세척작업 및 열 식히기 추진. - 더운 날씨와 비린내로 어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니, 상인들의 동의가 있을 시 소방서와 협의하여 오후시간대에 소방호수를 이용하여 세척 및 열 식히기 작업을 추진하기 바람.</p> <p>○ 3대 썸머페스티벌 성과 홍보 철저. - 150만명의 관광객, 810억원 직접 경제효과, 1천 370억원의 총 생산유발효과 등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.</p> <p>○ 하반기 의회 업무 준비 철저. - 의회 일정이 하반기로 집중되어 있는데, 특히 곧 있을 시정질문, 행정사무감사, 예산안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</p> <p>○ 학교 식중독 예방 점검 철저. - 다음주면 2학기 개학을 하고, 금년 더위가 9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</p> <p>○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및 안내방송 철저. - 우리시 노선안내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담당 부서장은 직원들과 직접 현장점검하고, 노선안내도 및 안내방송을 개선토록 할것.</p> <p>○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. - 몇몇 승강장이 인도 넓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확인후 위치이동 및 크기를 인도 넓이에 맞게 조정토록 조치하기 바람.</p>	<p>경제노동과 수산진흥과</p> <p>홍보담당관 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</p> <p>전 부 서</p> <p>환경위생과 남·북보건소</p> <p>교통행정과</p> <p>교통행정과</p>

입법예고

포항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10. 8. 20.

포항시 공고 제2010 - 779호

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면 연접제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규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연접제한을 완화하고,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 (안 18조)
-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(【별표16】)

3. 관련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

4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. 9.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도시계획과장, 주소 :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, 전화 270-3465, FAX 270-3470, E-mail : kimsiok@korea.kr)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5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@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본문 중 “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① 영 제5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, 제21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(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)
- 2. 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)
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차목·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)

별표16 제2호 아목 (2)중 “별표8” 을 “별표10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 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
<p>제18조(개발행위허가의 규모)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제18조(개발행위허가의 규모)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영 제55조제5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, 제21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(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)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차목·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)</p>

공 고

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 북구청장

2010. 8. 24.

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 2010 - 191호

도로지정 공고

- 1. 건명 : 도로의 지정
- 2. 도로의 위치지정내용

대지위치	도로지번	지정면적(㎡)	도로길이(m)	도로너비(m) (평균값)	지정일자	비고
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512-1번지	512-1	23.0	35.0	4.0	2010.08.24	

- 3. 도면 : 북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(문의 : 240-7484)